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9. 10. 23.(수) 09:32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

- 제47차 및 제49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
- 제47차 및 제49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7] 의결사항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 (2019-51-281~283)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에 대해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주)씨엠비에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현대에이치씨엔,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 PP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정 권고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51-28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개정안 주요내용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9-51-285~290)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기창인포텍, (주)편진, (주)카루, (주)에스에이치네트웍스, 캐롯(주)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8] 보고사항

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용어 변경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하고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용어 변경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 :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조치

9]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11월 1일(금)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0:58)